

	학생지도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5		
		제정일	1996. 03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학 생 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교육철학과 사명에 맞는 학생지도를 위해 설치한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학생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 본 대학 교원 3인 이상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상·벌에 관한 사항
2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학생처 직원으로 하며, 서기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.

제7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 단, 공공기관의 요청시에는 무기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학생지도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5		
		제정일	1996. 03. 12.		
		개정일	2022. 08. 31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